

# 2026

## 위험물관리법,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승진 소방법령3 핵심

**엠북 소방**

**공부혁명!**  
**mbook.kr**

- ✦ **스마트폰 수험총서**
- ✦ **소방공무원/자격증 기출 지문 중심**
- ✦ **최근 법령 개정 반영**
- ✦ **46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**

도서명 : 소방승진 소방법령3 핵심

ISBN : 979-11-7393-270-0

발간일 : 2026-06-10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[by4782@gmail.com](mailto:by4782@gmail.com)

정가 : 12,000원



# 소방승진 소방법령3(핵심)

## [목차]

제1편 위험물관리법(p4)

제2편 다중이용업소법(p71~96)

## [비고]

검은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 
기출문제 지문

하늘색은 빈출(2~3회 이상) 지문

붉은색은 5회 이상 빈출 지문(암기 필수)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# 제1편 위험물관리법

(이하 법)

## [목차]

제1장 총칙(p6)

제2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(p15)

제3장 제조소등 위치·구조 및 설비 기준(p21)

제4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(p43)

제5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(p51)

제6장 위험물의 운반 등(p63)

제7장 보칙·벌칙(p66)

## [약어]

부령은 행정안전부령

고시는 정하여 고시

청장은 소방청장

본부장은 소방본부장

서장은 소방서장

탱크시험은 탱크안전성능시험

탱크검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

시험자(탱크시험자)는

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

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

운반자는 위험물운반자

운송자는 위험물운송자

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

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

대행기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

# 제1장 총칙

## 제1절 목적 등

### 1. 목적

- 위험물 저장/취급/운반과 안전관리
- 위험물 인한 위해 방지, 공공 안전

### 2. 정의

가. 위험물은 인화성, 발화성 등의 성질 가진 대통령령상 물품

나. 지정수량은 위험물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

-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의 최저 기준

다. 제조소는 위험물 제조 목적으로 지정수량

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 받은

장소

라.

-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,

-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

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

- 하기 위한 시도지사 허가 받은 대통령령상

장소

마. 제조소등은 제조소, 저장소/취급소

## 바. 도로

- 도로법상 도로
  -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
  - 사도
  -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m 이상
-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 가능

## 3. 법 적용제외

- 항공기, 선박, 철도, 궤도
- 단, 차량은 적용

## 4. 기타

- 시도 조례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 
저장/취급 기준 정함

- 탱크 용량은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 
뺀 용적

### 제2절 위험물 및 지정 수량

- 4류 이외는 함유물 포함, 단위는 킬로그램

1. 제1류 산화성고체(이하 1류)

- 아염소산염류, 염소산염류, 과염소산염류,

무기과산화물은 50

- 브로민산염류, 질산염류, 아이오딘산염류는

300

- 다이크로뮴산염류는 1,000
- 아이오딘 산화물
-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

## 2. 제2류 가연성고체 (이하 2류)

- 화염에 의한 발화/인화 위험
- 황화인, 적린, 황은 100
- 철분, 금속분, 마그네슘은 500
- 인화성고체는 1,000

### 가) 황

-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
-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함

## 나) 철분은 철의 분말

- 53 $\mu$ 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 제외

## 다) 금속분

- 알칼리금속, 알칼리토류금속, 철,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
- 구리분/니켈분과 150 $\mu$ 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 제외

## 라) 마그네슘은 다음 제외

- 2mm의 체를 통과 못하는 덩어리
-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

마) 인화성고체

-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40도 미만

### 3.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

**금수성물질**(이하 3류)

- 고체나 액체로서 공기 중 발화 또는 물과 접촉해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 발생
- 칼륨, 나트륨, 알킬알루미늄 10
- **황린**은 20
- 알칼리금속, 알칼리토금속 50
- 염소화규소화합물

#### 4. 제4류 인화성액체 (이하 4류): 단위는 리터

가) 인화 위험 있는 액체

나) **특수인화물은 50**

- 이황화탄소,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

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 또는

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40도

이하

다) **제1석유류**는 비수용성 **200**, 수용성 400

- 아세톤, 휘발유, 인화점 21도 미만

라) **알코올류**는 400

- 1분자 구성 탄소원자가 1~3개인 포화1가

알코올, 변성알코올

마) **제2석유류**는 비수용성 1,000, 수용성 2,000

- 등유, 경유

- 단, 도료류 등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도 이상이고 연소점이 60도 이상인 것 제외

바) 제3석유류는 비수용성 2,000, 수용성 4,000

- 중유, 크레오소트유, 인화점 70도 이상  
200도 미만

사) 제4석유류는 6,000

- 기어유, 실린더유, 인화점이 200도 이상  
250도 미만

아) 동식물유류는 10,000

- 동물 지육, 식물 종자/과육에서 추출

- 인화점 250도 미만

(비고) 고인화점 위험물은 인화점이 100도 이상인 4류

5. **제5류 자기반응성물질** (이하 5류)

- 지정수량은 1종 10, 2종 100
- **유기과산화물**, 질산에스터류
- 나이트로화합물, 아조화합물
- 질산구아니딘

6. **제6류 산화성액체** (이하 6류): 300

- **과염소산**
- **과산화수소** (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)
- **질산**
- **할로젠간화합물**